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
ついでに合意された議事録

日本国政府代表及び大韓民国政府代表は、本日署名
された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
関して次の了解に到達した。

1 証明書及び標識に關し、

(a) 両国政府は、証明書及び標識が、港内における
場合を除き、海上において一の漁船から他の漁船
に引き渡さ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行政指導を行な
う。

(b) 一方の国の政府は、自国の出漁漁船の正午位置
報告に基づき漁業別出漁状況を月別に集計して毎
年少なくとも四回他方の国の政府に通報する。

2 年間総漁獲基準量に關し、

(a) 共同規制水域内における底びき網漁業、まき網
漁業及び六十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さばつり漁業
による年間総漁獲基準量は、十五万トン（上下十
パーセントの変動がありうる。）とし、日本国に
ついては、この十五万トンの内訳は、五十トン未
滿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業については一万トン、
五十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業につて
は三万トン及びまき網漁業と六十トン以上の漁船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영전에

대한 합의 의거함

일본국 정부 대표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공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 양해에
도달하였다.

1 공통된 표지에 관하여

(a) 양국 정부는 공통된 표지가 양국 안에서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 어느 어선으로부터든 다른 어선에
인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

(b) 일본국의 정부는, 자국의 출어 어선의 경우 위치
보고에 의거하여 어업별 출어 상황을 일별로 집계하여 매년
적어도 4회 해당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2 어장 총 어획 기준량에 관하여

(a) 공동 규제 구역 안에서와 저인망 어업, 전망
어업 및 60톤 이상의 어선의 어획 조종어 낚시 어업에 의한
어장 총 어획 기준량은 15만톤 (상하 10퍼센트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하고, 일본국에 대하여는 이 15만톤의
내역을 5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共同規制
水域内の
年間總漁
獲基準量
の漁獲報
相通報

証明書及
標識の出
漁状況に
相互通報

いすれの国の政府も、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適用の対象となる漁業に従事する自国の漁船が共同規制水域内において漁獲した漁獲物を水揚げすべき港を指定する。

(d) いずれの国の政府も、他方の国の政府の公務員が3(c)の視察を行なう際に、当該他方の国の政府の要請があつたときは、その公務員に対し、暫定

的漁業規制措置の適用の対象となつてゐる自国の漁船による漁獲物の水揚げ状況を視察させるための便宜をもあわせてできる限り与え、また、漁獲量の報告及び集計の状況についてできる限り説明が行なわれるよう取り計らう。

3 暫定的漁業規制措置に関する取締り及び違反に關し、

(a) 一方の国の監視船上にある権限を有する公務員は、他方の国の漁船が現に暫定的漁業規制措置に明らかに違反している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のある事実を発見したときは、直ちにこれをその漁船の属する国の監視船上にある権限を有する公務員に通報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他方の国の政府は、当該漁船の取締り及びこれに対する管轄権の行使に当たつて、その通報を尊重することとし、その結果孰られた措置を当該一方の国の政府に対し通報する。

(b) 両国の監視船は、暫定的漁業規制措置に關してそれぞれ自国の漁船に対して行なう取締りの実施に当たり、その取締りを円満かつ効果的に行なうため、必要に応じ、あらかじめ両国の関係当局間において協議されたところに従い、相互に連携し

(1)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이 3(c)의 시를을 일임에 있어서 당해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감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자국의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양과 상황을 시정시키기 위한 편의도 가능한 한 제공하며 또한 어획물의 보고 및 집계와 상황에 대하여 가능한 한 설명이 일하여지도록 한다.

3 감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한 약속 및 위반에

관하여

(a) 일방국의 감시선 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타방국의 어선이 현재 감정적 어업 규제 조치를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곧 이를 그 어선이 속하는 국가의 감시선 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당해 타방국 정부는 당해 어선의 약속 및 이에 대한 compliance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존중하며, 그 결과 취하여진 조치를 당해 일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b) 양국의 감시선은 감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하여 각각 자국 어선에 대한 약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暫定的漁業規制措置
に關する取締り及
違反措置

て巡視し、かつ、緊密な連絡を保持することができらる。

(c) いずれの国の政府も、他方の国の政府の要請があつたときは、暫定的漁業規制措置に関し、自国内における取締りの実施状況を視察させるための便宜を、このために特に権限を与えられた他方の国の政府の公務員に対し、できる限り与える。

(d) いずれの国の政府も、他方の国の政府の要請があり、かつ、これを適當と認めるときは、暫定的漁業規制措置に関して自国がその漁船に対して行なう取締りの実施に当たり、その実情の視察のため、当該他方の国の政府の公務員をもつばら漁業の取締りに従事する自国の監視船に乗船させるための便宜を相互にできる限り与える。

4 日韓漁業共同委員会に関し、

日韓漁業共同委員会よ、その常設の事務局の事務局長を、毎年の定例年次會議の閉会前に、翌年の定例年次會議が開催される締約国の国別委員部の委員の中から選任する。事務局長の任期は、一年とする。事務局長は、自国の關係当局の補佐を受け、及び、必要に応じ、自国に駐在する他方の締約国の権限を有する公務員の援助を受けて、委員會の會議の開催

이를 엄만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전에 양국의 관계 당국 간에서 협의되는 바에 따라 상호 계류하여 순시하고, 또한 견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c)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한 자국 안에서의 민속의 실시 상황을 서술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특히 권한을 부여 받은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d)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고 또한 이를 각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하여 자국 어선에 대한 민속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 실정을 서술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으로부터 어업의 민속에 종사하는 자국의 잠수선에 승선시켜 그 편의를 상호 가능한 한 제공한다.

4 일 한 어업 공동 위원회에 관하여
일 한 어업 공동 위원회는 상설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매년 정기 연차 회의의 폐회 전에 양년의 정기 연차 회의가 개최될 제각각의 국립 위원부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사무국장의

準備を含め、その他の必要な事務局の事務を遂行する。

仲裁委員
の選定

5 仲裁委員会に關し、協定第九条3にいう両国政府のそれぞれが選定する国及びそれらの国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三国は、日本国及び大韓民国の双方と外交關係を有する国のうちから選ばれるものとする。

監視船間の
出漁状況
の提供情報

6 監視船間の出漁状況の情報提供に關し、
一方の国の監視船は、共同規制水域内における漁船の出漁状況につき必要と認めるときは、他方の国の監視船に対して必要な情報を提供するよう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他方の国の監視船は、できる限りこの要請に応ずるものとする。

沿岸漁業

7 沿岸漁業に關し、
兩國政府は、沿岸漁業（底びき網漁業、まき網漁業及び六十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さばつり漁業を除く。）の操業の実態に關して情報交換を行ない、漁場秩序を維持するため必要ときは、相互に協議を行なう。

国・内・水・域
祭・止・漁・業
等・の・相・互
尊・重

8 (a) 国内漁業禁止水域等の相互尊重に關し、
日本国政府が現在設定している底びき網漁業及
びまき網漁業についての漁業禁止水域並びに底び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사부국장은 자국의 관제 당국의 표를
받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아랍 제왕국의
관헌있는 공무원의 임조를 받아 위원회의 회의 개최 준기를
조용한 기리의 필요한 사무국의 사무를 수행한다.

5. 亞細亞火油公司

법정 제 9조 3에서 규정한 양국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 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 중에서 선정한다.

6. 감사선전의 효과 상환의 정도 제공에 관하여

일본국의 감시선은 공동 국제 수역 안에서 자신의
출어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방국 감시선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타방국
감시선은 가능한 한 이에 응한다.

७
॥ श्रीगणेशाय नमः ॥
ॐ नमो भगवते वासुदेवाय ॥

양국 정부는 연한 아업 (자이만 아업, 신항 아업 피 60년
이상의 어선 에 의한 공동 어 나시 아업을 제외함) 의 조업 실행 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어 감 집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함.
대에는 상호 협의한다.

き網漁業についての東経百二十八度、東経百二十八度三十分、北緯三十三度九分十五秒及び北緯二十五度の各線で囲まれた水域と大韓民国政府が現在設定している底びき網漁業及びトロール漁業についての漁業禁止水域とに關し、兩國政府は、それぞれ相手国のこれらの水域において当該漁業に自国の漁船が従事しないように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

(b) 大韓民国政府が前記の大韓民国の漁業禁止水域内の黄海の部分において大韓民国の五十トン未満の漁船による底びき網漁業及び同水域内の日本海の部分において大韓民国のえび底びき網漁業に關して実施している制度は、例外的に認められる。

(c) 一方の国の監視船上にある権限を有する公務員が(向)に掲げるその国の水域において他方の国の漁船が操業していることを発見した場合には、その事実につき当該漁船の注意を喚起するとともに、すみやかにその旨を当該他方の国の監視船上にある権限を有する公務員に通報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他方の国の政府は、当該漁船の取締り及びこれに対する管轄権の行使に当たつて、その通報を尊重することとし、その結果執られた措置を当該一方の国の政府に対し通報する。

8 국내 어업 금지 구역 등의 상토 관중에 관하여

(a) 일본국 정부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저인량 어업 및 저인망 어업에 관한 어업 금지 구역과 저인망 어업에 관한 동경 128도, 동경 128도 30분, 북위 33도 9분 15초 및 북위 32도의 주선으로 둘러싸인 구역과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저인망 어업 및 저인망 어업에 관한 어업 금지 구역에 관하여, 양국 정부가 각각 상대방의 구역에서 당해 어업에 자국 어선이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b) 대한민국 정부가 전거한 대한민국의 어업 금지 구역의 황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50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 및 동수역 인의 동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저수역 저인망 어업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c) 일본국의 금지 건상에 있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a)에서 열거한 동국의 수역에서 상대방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선에 관하여 당해 어선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조속히 이를 당해 상대방의 금지 건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당해

無害通航

9 無害通航に關し、

領海及び漁業に關する水域における無害通航(漁船は漁具を格納した場合に限る。)は、國際法規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10 海難救助及び緊急避難に關し、

兩國政府は、兩國の漁船の海難救助及び緊急避難に關し、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取極を行なうものとする。その取極が兩國政府の間で行なわれる前にあつても、兩國政府は、兩國の漁船の海難救助及び緊急避難について國際慣行に従つてできる限り適切な救助及び保護を与えるものとする。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

E.S.

T.W.L.

이민국 정부는 망해 어선의 만속 및 이에 대한 검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존중하며, 그 결과 위하여진

조치를 당해 일민국 정부에 통보한다.

9 부해 통항에 관하여

망해 및 어선에 관한 수역에서의 부해 통항 (어선은

어구를 격납한 경우에 한함)은 국제 법규에 따르는 것임이

확인된다.

10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양국의 어선의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약정한다. 그 약정이 양국 정부 간에

이후에 지기 전에도 양국 정부는 양국 어선의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대하여 국제 관행에 따라 가능한 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를 한다.

1965년 6월 11일

토오쿄오에서

E.S.

T.W.L.

海難救助
及緊急避難

(漁業協定附属書に定める標識に関する交換公文)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大臣は、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の附属書に定める標識の様式及び附着場所につき、両国政府の代表者の間で次のとおりの了解に到達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 1 標識には、漁船の国籍を示す略字並びに漁業の種類及び根拠地港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番号を付するものとし、その様式は、別紙のとおりとする。
- 2 標識には、夜間において前記の略字及び番号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塗料を塗付するものとする。
- 3 すべての標識には、おのおの政府の発給証印を付するものとする。
- 4 標識の附着場所は、船橋の両側の上辺の見やすいところとする。

前記の了解を大韓民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される閣下の返簡を受領したときは、日本国政府は、この書簡及び閣下の返簡が前記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効力を生ずる両国政府間の合意を構成するものとみなします。

本大臣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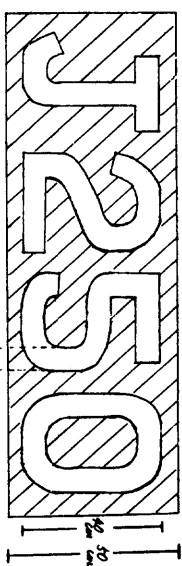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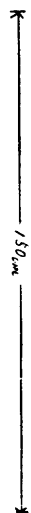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

日本国外務大臣 椎名悦三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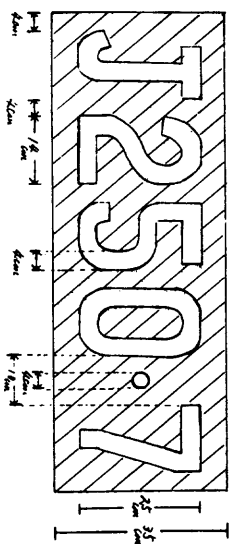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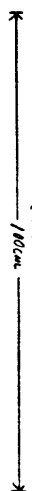
大韓民国外務部長官 李東元閣下

(a) 日本側様式

(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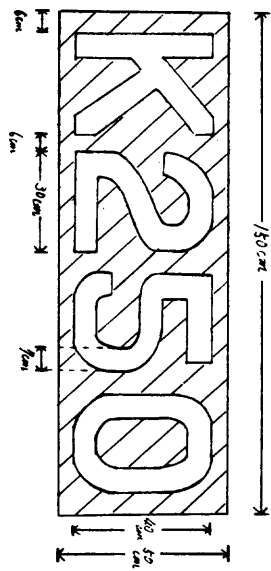
(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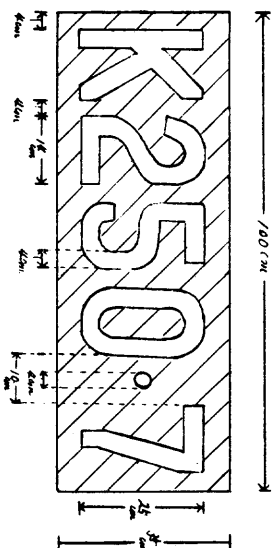
(備考) 斜線の部分は黄橙色、その他の部分は黒色とする。

(b) 韓国側様式

(正)



(副)



(備考) 斜線の部分は黒色、その他の部分は黄橙色とする。

(訳文)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長官は、本日付の閣下の次の書簡を受領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日本側書簡)

本長官は、前記の了解が大韓民国政府の了解でもあること並びに大韓民国政府が閣下の書簡及びこの返簡を前記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効力を生ずる両国政府間の合意を構成するものとみなすことを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本長官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

外務部長官 李東元

日本国外務大臣 椎名悦三郎閣下

1965년 6월 22일

보요보요에게서

귀하,

본장은 남일자의 귀하의 다음과 같은 서신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는 영장을 가집니다.

(일본측서한)

본장은 외국 일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해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 리한자 귀하의 서신이 상기 영장의 발효 일자에 의해 발령하는 양자 정부 간의 협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장을 가집니다.

귀하에게 서신이 본장의 발령하는 영장을 포함하는 바입니다.

인본가 외부장관

외무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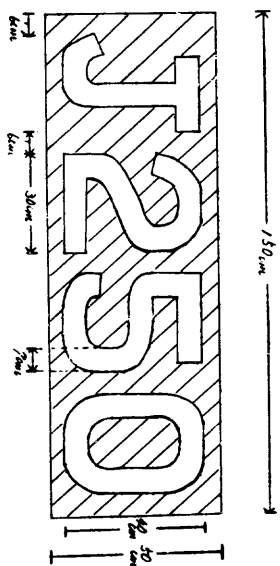
시이나 에노 사부로우

외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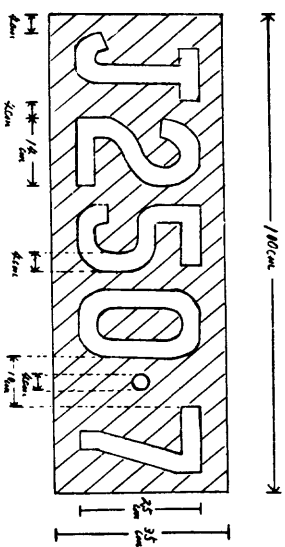
보요보요.

(가) 漁業標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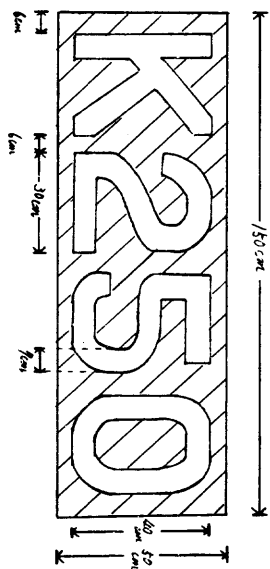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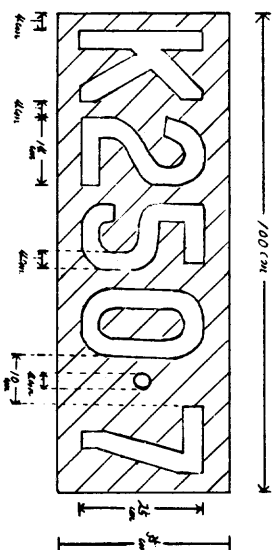
비고: 사진 부분은 활동식, 가 마의 부분은 불식어로 한다.

(b) 한국과 양식

(공)



(부)



비고: 사진 부분은 양식. 각자의 부분은 해당 규격으로 한다.

(漁業協力に関する交換公文)

(訳文)

韓國側書
技術及び
経済分野
における
相互協力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長官は、本日署名された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に言及し、両国政府の代表の間で到達された次の了解を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両国政府は、両国の漁業の発展と向上を図るため、技術及び経済の分野においてできる限り相互に密接に協力するものとする。

この協力のうちには、次のことが含まれる。

- (1) 漁業に関する情報及び技術を交換すること。
- (2) 漁業専門家及び技術者を交流させること。

前記の了解を日本国政府に代わつて確認される閣下の返簡を受領したときは、大韓民国政府は、この書簡及び閣下の返簡が前記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効力を生ずる両国政府間の合意を構成するものとみなします。本長官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

外務部長官 李東元

日本国外務大臣 椎名悦三郎閣下

1965년 6월 22일

요요로요에서

각하,

본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이해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며, 양국 정부 대표간에 다음 양해를 확인하는 양해를 하길 바랍니다.

양국 정부는 양국 어업의 협정과 협상을 토대로 하기 위하여 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상호 밀접하게 협력한다.

이 협약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어업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교환
- (2) 어업 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

위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귀하의 회신을 접수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 서한과 귀하의 회신이 상호 협정의 발효일자에 로백이 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서보이 본협이 체결되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부 대신

시이나 에츠사부로요

외부장

요요로요.

0 / 동원
외부장 장관

書簡をもつて啓上いたします。本大臣は、本日付けの閣下の次の書簡を受領したことを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韓国側書簡)

本大臣は、前記の了解が日本国政府の了解でもあること並びに日本国政府が閣下の書簡及びこの返簡が前記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効力を生ずる両国政府間の合意を構成するものとみなすことを確認する光栄を有します。

本大臣は、以上を申し進めるに際し、ここに重ねて閣下に向かつて敬意を表します。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

日本国外務大臣 椎名悦三郎

大韓民国外務部長官 李東元閣下

日本側書
簡安
全操
業の
ため
の民
間の
取
決
め

（安全操業に関する往復書簡）

（日本国外務省アジア局長の韓国外務部亜州局長あて書簡）

本官は、本日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が署名されるに際し、日本国の水産当局が、日韓両国の漁船間の操業の安全を図り、かつ、その正常な秩序を維持するため及び海上における両国の漁船間の事故の円滑かつ迅速な解決を図る目的に資するため、両国の民間関係団体の間において別紙に掲げる項目をもつた取決めが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行なわれるように日本国の民間関係団体を指導する意向であることを申し述べます。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外務省アジア局長 後宮虎郎

外務部亜州局長 延河亀殿

(別紙)

操業安全及び秩序維持に關する項目

一 標識及び信号

㊦ 漁船の漁ろう作業中の事実を示す標識

㊦ 漁船の漁ろう中に生じた事故を示す標識

㊦ 漁船の夜間における投びよう及び停泊を示す標識

識

四 漁船の夜間識別信号及び針路汽笛信号

二 操業中の遵守事項

㊦ 前方の漁ろう作業中の漁船の操業を尊重する原則

則

㊦ 漁ろう作業中の漁具の延伸区域を尊重する原則

㊦ 複数の漁ろう体の並航操業の場合における原則

四 ふくそうする漁場における操業の原則(まき網

漁業における灯船の操業間隔を含む。)

三 避航に關する事項

㊦ 漁ろう作業中の漁船の優先の原則

㊦ 漁ろう作業中の漁船相互の避航についての原則

㊦ 漁ろう作業中に事故(漁具喪失、ロープ切断等)

に会つた漁船優先の原則

四 投びよう及び停泊についての注意事項

五 海難救助に關する事項

六 漁船及び漁具の被害補償に關する事項

(韓国外務部並州局長の日本国外務省アジア局長あて書簡)

(訳文)

本官は、本日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が署名されるに際し、大韓民国の水産当局が、韓日両国の漁船間の操業の安全を図り、かつ、その正常な秩序を維持するため及び海上における両国の漁船間の事故の円滑かつ迅速な解決を図る目的に資するため、両国の民間関係団体の間において別紙に掲げる項目をもつた取決めが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行なわれるように大韓民国の民間関係団体を指導する意向であることを申し述べます。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

外務部並州局長 延河亀

外務省アジア局長 後宮虎郎貫下

1965년 6월 22일
평양에서

본관은 남일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에 즈음하여, 대한 민국의 수산 당국은 한 일 양국 어선 간의 어업 안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국 어선 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부처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의 민간 관계 단체 간에서 별지의 일정한 항목을 포함한 약정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대한 민국의 민간 관계 단체를 지도할 의향을 일임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성 아세아국장

우치노 다카오 도모오

외무성

도모오.

아국국장 이하구

(別紙)

操業安全及び秩序維持に関する項目

一 標識及び信号

- (一) 漁船の漁ろう作業中の事実を示す標識
- (二) 漁船の漁ろう中に生じた事故を示す標識
- (三) 漁船の夜間における投びよう及び停泊を示す標識

四 漁船の夜間識別信号及び針路汽笛信号

二 操業中の遵守事項

- (一) 前方の漁ろう作業中の漁船の操業を尊重する原則
- (二) 漁ろう作業中の漁具の延伸区域を尊重する原則
- (三) 複数の漁ろう体の並航操業の場合における原則
- (四) ふくそうする漁場における操業の原則(まき網漁業における灯船の操業間隔を含む。)

三 避航に関する事項

- (一) 漁ろう作業中の漁船の優先の原則
- (二) 漁ろう作業中の漁船相互の避航についての原則
- (三) 漁ろう作業中に事故(漁具喪失、ロープ切断等)に会つた漁船優先の原則

四 投びよう及び停泊についての注意事項

五 海難救助に関する事項

六 漁船及び漁具の被害補償に関する事項

標識

操業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항목

1 표지 및 신호

- (1) 어트 작업 중인 어선이 그 사건을 표시하는 표지
- (2) 어선의 어트 중에 발생한 사고를 표시하는 표지
- (3) 어선의 야간에 있어서의 투트 및 정박을 표시하는 표지
- (4) 어선의 야간 식별 신호 및 램프 기적 신호

2 작업 중의 준수 사항

- (1) 전방에서 어트 작업 중인 어선의 작업을 존중하는 원칙
- (2) 어트 작업 중인 어구의 연신 구역을 존중하는 원칙
- (3) 복수의 어트체의 병행 작업에 있어서의 원칙
- (4) 복수하는 어장에서 작업 원칙 (연립 어업에 있어서는 등간의 작업 간격을 포함함)

3 피항에 관한 사항

- (1) 어트 작업 중인 어선 우선의 원칙
- (2) 어트 작업 중인 어선 상호 피항에 대한 원칙
- (3) 어트 작업 중의 사고 어선 (어구 상실, 로프 절단 등) 우선의 원칙

4 투트 및 정박에 관한 주의 사항

5 해난 구호에 관한 사항

6 어선, 어구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討議の記録

日韓漁業協定の締結のための交渉に際し、日韓双方よりそれぞれ次の発言がなされた。

日本側代表

日本の側面
表の発言
出漁隻数
又は統計
の行政指
導に依り
行つて

(a) 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2 (a)にいう「出漁隻数又は統数を抑制するよう行政指導を行なう。」における行政指導には、証明書及び標識の発給数の調整が行なわれるよう指導することを含む。

取締りの
視察の
実施

(b) 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3 (c)にいう「国内における取締りの実施状況の視察には、証明書及び標識の発給状況についての説明が行なわれることを含む。」

日本の沿岸
漁業の
実体

(c) 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適用の対象とならない沿岸漁業に従事する日本国の漁船で共同規制水域内に出漁するものの大半は零細な経営規模のものであり、その操業区域もこのような漁船の出漁能力の実体からみて同水域内においては主として対馬北方から済州島北西方までであり、このような実体は、当該漁業の実情からみて今後大きく変動す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

韓の 기록

일한 어업 협정의 체결을 위한 고섭이 있어서 일한 양측으로부터 각각 다음 발언이 있었다.

일본측 대표

(a)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2 (a)에서 말하는 "출어 척수 또는 통수율 억제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의 행정 지도에는, 감할 및 표지의 발급수의 조정이 행하여 지도를 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b)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3 (c)에서 말하는 자국 내에서의 만속의 실제 상황의 관찰에는, 감할 및 표지의 발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행하는 지도 포함된다.

(c) 잠정적 어업 규제 조키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일본국 어선으로서 공동 규제 구역 안에 출어하는 것의 대부분은 영저한 경영 구역의 것이며, 그 초입 구역도 이러한 어선의 출어 능력의 실태로 보아 등 수역 안에서는 주로 대마도 북방으로부터 제주도 서쪽방까지이며, 이러한 실태는 당해 어업의 실정으로 보아 급후 크게 변동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韓国側代表の発言

出漁隻数又は統指数について行政指導

取締りの視察

韓国側代表

(a) 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 2 (a) にいう「出漁隻数又は統指数を抑制するよう行政指導を行なう。」における行政指導には、証明書及び標識の発給数の調整が行なわれるよう指導することを含む。

(b) 協定についての合意された議事録 3 (c) にいう「国内における取締りの実施状況の視察には、証明書及び標識の発給状況についての説明が行なわれることを含む。」

T. H.
K. S. L.

한국측 대표

(a) 협정에 대한 합의 의거록 2 (a) 에서 말하는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의 행정 지도에는, 증명서 및 표지의 발급수의 조정이 행하여 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b) 협정에 대한 합의 의거록 3 (c) 에서 말하는 자국 내에서의 민속의 실시 상황의 시험에는 증명서 및 표지의 발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T.H.
K.S.L.

(参考)

日韓漁業協定の署名に際して行なわれた両国政府の声明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a) 日本国外務大臣の声明

日本国政府は、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が効力を生じ、日本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が設定されたときは、日本国の監視船による大韓民国の漁船の同水域の侵犯の事実の確認とその漁船及び乗組員の取扱いとについて、国際通念に従い公正妥当に処理する用意があることをここに声明する。

(b) 韓国外務部長官の声明

(訳文)

大韓民国政府は、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が効力を生じ、大韓民国の漁業に関する水域が設定されたときは、大韓民国の監視船による日本国の漁船の同水域の侵犯の事実の確認とその漁船及び乗組員の取扱いとについて、国際通念に従い公正妥当に処理する用意があることをここに声明する。

(c) 日本国農林大臣の声明

二九〇

本大臣は、本日署名された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が効力を生ずるときに日本国と大韓民国の共同規制水域において暫定的漁業規制措置が実施されることとなることに関連し、日本国政府が次のとおりの措置を執る方針であることをここに声明する。

1 共同規制水域のうち大韓民国の慶尙北道と慶尙南道との境界線と海岸線との交点と北緯三十五度三十分と東経百三十度との交点とを結ぶ直線以北の日本海の水域において、同時に操業することができ日本国の底びき網漁船は二十五隻を上回ることはないように、並びにそのような漁船が十一月一日から翌年の四月三十日までの期間以外の期間において操業しないように、及び水深三百メートル以浅の部分においては操業しないように指導する。同政府は、また、そのような漁船によるえびの混獲を毎航海の総漁獲量の二十パーセントの範囲内にとどめるように指導する。

2 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適用の対象とならない種類の漁業に従事する日本国の漁船で共同規制水域内において同時に沿岸漁業に従事するものの隻数は、千七百隻を上回ることがないように指導する。

また、これらの日本国の漁船のうち六十トン未満二十五トン以上のさばつり漁船の操業期間は、六月一日から十二月三十一日までとし、その操業区域は、共同規制水域のうち、大韓民国の慶尙北道と慶尙南道との境界線と海岸線との交点と北緯三十五度三十分と東経百三十度との交点とを結ぶ直線以南（ただし、済州島の西側においては北緯三十三度三十分以南）の水域とし、また、この隻数は、百七十五隻を上回ることがないよう指導する。

3 日本国政府は共同規制水域内の鯨資源の状態で深い関心を有しているので、同水域内において、小型捕鯨業の操業隻数及びその漁獲努力を現在以上に増大しないように、また、大型捕鯨業（百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もの）の操業隻数を現在程度以上に増大しないように指導する。

（d）韓国農林部長官の声明

（訳文）

本長官は、本日署名された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が効力を生ずるときに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共同規制水域において暫定的漁業規制措置

が実施されることとなることに関連し、大韓民国政府が次のとおりの措置を執る方針であることをここに声明する。

1 暫定的漁業規制措置の適用の対象とならない種類の漁業に従事する大韓民国の漁船で共同規制水域内に出海するものうち六十トン未満二十五トン以上のさばつり漁船の操業期間は、六月一日より十二月三十一日までとし、その操業区域は、共同規制水域のうち、大韓民国の慶尙北道と慶尙南道との境界線と海岸線との交点と北緯三十五度三十分と東経百三十度との交点とを結ぶ直線以南（ただし、済州島の西側においては北緯三十三度三十分以南）の水域とするように指導する。

2 大韓民国政府は共同規制水域内の鯨資源の状態で深い関心を有しているので、同水域内において、小型捕鯨業の操業隻数及びその漁獲努力を現在以上に増大しないように、また、大型捕鯨業（百トン以上の漁船によるもの）の操業隻数を現在程度以上に増大しないように指導する。

(参考)

この協定は、漁業資源の最大の持続的生産性の維持及び保存並びに合理的発展を図り、日韓両国間の漁業紛争の原因を除去して相互に協力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であり、公海自由の原則を確認するとともに、それぞれの国が漁業に関する水域を設定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認め、その外側における取り及び裁判管轄権は漁船の属する国のみが行なうこと、共同規制水域を設定して暫定的共同規制措置を執る等、両国の漁業関係について規定している。